

의안번호	2208009
의 퇴 인	천준호의원
회 답 일	2025. 5. 22.
추 계 번 호	25B0746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사유지도로 관리기본계획 및 시·도 관리계획 수립, 사유지도로 실태조사, 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92억 6,500만원(연평균 118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 국 비: 향후 5년간 총 10억 1,300만원(연평균 2억 300만원)
- 지방비: 향후 5년간 총 582억 5,300만원(연평균 116억 5,100만원)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사유지도로 관리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안 제4조 및 제5조)	290	10,438	—	—	—	10,728	2,146
사유지도로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 (안 제6조 및 제11조)	1,445	—	—	—	—	1,445	289
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 (안 제10조)	9,245	9,041	9,313	9,602	9,891	47,092	9,418
합 계	10,980	19,479	9,313	9,602	9,891	59,265	11,853
국비	1,013	—	—	—	—	1,013	203
지방비	9,968	19,479	9,313	9,602	9,891	58,253	11,651

주: 1.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사유지도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유지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유지도로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함.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1항) 1. 사유지도로 관리에 관한 국가의 정책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유지도로 관리계획의 수립방향 3. 사유지도로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유지도로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사유지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사유지도로 관리계획의 수립 등)	시·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유지도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1. 사유지도로 관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유지도로의 정비사업 실시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3. 사유지도로 관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유지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사유지도로 실태조사)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유지도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1. 사유지도로 위치·지번·지목·면적 2. 사유지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상태 3. 사유지도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 현황 4. 사유지도로에 설치된 시설물·공작물의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재량 규정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7조(위험사유지도로의 지정 및 정비사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 내의 사유지도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사유지도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사유지도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3항)	채량규정
5	안 제9조(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10조(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사유지도로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제2항) 1. 통행에 관한 사유지도로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간 분쟁 2.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험사유지도로의 지정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사유지도로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위원회 위원은 사유지도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함(제4항) 1. 해당 시·도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사유지도로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음(제9항)	의무규정 채량규정
7	안 제11조(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음	채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4조(사유지도로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유사사례 및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참고
2	안 제5조(사유지도로 관리 계획의 수립 등)	○	• 유사사례 및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참고
3	안 제6조(사유지도로 실태 조사) 및 안 제11조(재정 지원)	○	• 유사사례 및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참고
4	안 제7조(위험사유지도로의 지정 및 정비사업)	×	• 미첨부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위험사유지도로에 대한 정비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비사업의 방법과 내용도 구체화되지 않아 이에 따른 비용과 손실 보상 내역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5	안 제9조(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6	안 제10조(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 유사사례 및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참고

자료: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유지도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사유지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유사사례 연구용역 사업비를 참고함
 - 유사사례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비 평균값을 적용
- 안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사유지도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 실태조사 사업비를 참고함
 - 시·도에서 시행하는 사유재산(도로), 공유재산(도로) 실태조사 사업비 평균값을 적용
 - 시·도가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재원부담비율은 현재 불확정적이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5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10조에 따른 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용은 국토교통부 내 분쟁조정 유사위원회 운영현황을 참고함
 - 국토교통부 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추계함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공공기관 자산취득비 전망 적용¹⁾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5.3.)

(단위: %, 천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2	3.9	3.8	3.8	3.8	3.8
자산취득비(공공기관)	6,855	6,992	7,132	7,274	7,420	7,568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사유지도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및 사유지도로 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사유지도로 관리기본계획과 사유지도로 관리계획 수립비용은 도로 관련 유사 계획 수립 사업비를 참고하여 추산함

- 유사 사례로 「도로법」 제5조²⁾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 등을 위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³⁾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음⁴⁾

2) 「도로법」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건설·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건설·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 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참고자료] ‘국토종합계획 부문별(도로) 계획 현황’ 참조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유지도로 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경우 연구용역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으로 가정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사유지도로 관리계획은 사유지도로 관리기본계획 수립 다음 해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시·도별 평균 6억 1,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2] 유사사례 연구용역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실시기관	연구용역명	시행년도	사업비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수립	2021	290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 수립	2024	698
	강원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 수립	2024	554
	서울특별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 수립	2024	591
	평 균		614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조달청 나라장터

□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사유지도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5년마다 사유지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사유지도로 관리계획 수립 비용: 17개 시도 × 6억 1,400만원 = 104억 3,800만원)

[표 3] 사유지도로 관리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사유지도로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290	-	-	-	-	290
사유지도로 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10,438	-	-	-	10,438
합 계	290	10,438	-	-	-	10,728
국비	290	-	-	-	-	290
지방비	-	10,438	-	-	-	10,438

주: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계획 수립 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사유지도로 실태조사(안 제6조) 및 재정지원(안 제11조)

□ 시·도지사가 사유지도로 위치·지번·지목·면적, 유지관리 현황 및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산함

- (추계대상) 사유지도로 실태조사는 17개 시·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단가) 유사사례의 평균 사업비 8,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 서울특별시 및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시유재산(도로), 공유재산(도로) 실태조사의 평균 사업비는 8,500만원임
- (재정주체별 재정부담) 사유지도로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부담은 현재 미확정적이므로 5:5로 가정함

[표 4] 도로 관련 실태조사 현황

(단위: 백만원)

실시기관	실태조사명	시행년도	사업비
서울특별시	2022년 시유재산(도로) 실태조사	2022년	100
광주광역시	2024년 공유재산(도로) 실태조사	2024년	70
평 균			85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사유지도로 위치·지번·지목·면적, 유지관리 현황 및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사유지도로 실태조사비용: 17개 시도 × 8,500만원 = 14억 4,500만원
- 국비와 지방비의 재원부담은 5:5로 가정

[표 5] 사유지도로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사유지도로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안 제6조 및 제11조)	1,445	—	—	—	—	1,445
국비	723	—	—	—	—	723
지방비	723	—	—	—	—	723

주: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조사 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국토교통부 내 공동주택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시·도에 위원회를 설치할 때 소요비용을 추산하며, 소요비용은 위원회 조사관 등 인건비 및 경상경비, 위원회 회의운영비로 구분됨
- (위원회수) 제정안은 시·도에 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17개 시도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는 시·도 단위에 설치되는 점과 유사사례 운영현황⁵⁾을 감안하여 조사관 총 4인이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함에 따른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기본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인건비: $4인 \times 8,950만원 = 3억 5,800만원$ (2026년 기준)
 - 유사사례 인건비⁶⁾를 참고하여 조사관 1인당 8,950만원(기관부담금 포함)으로 가정하며,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 적용
 - 자산취득비: $4인 \times 699만원 = 2,796만원$ (2026년 기준)
 - 사업 첫해에 소요되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자산취득비 전망 적용(인당 699만원, 2026년)
 - 기본경비: $3억 5,800만원(인건비) \times 31.1\% = 1억 1,134만원$ (2026년 기준)
 - 유사사례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중(31.1%)⁷⁾ 적용하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적용

5)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60인으로 구성되며, 분쟁조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14인(연구원 12인 및 보조원 2인)이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6)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연구원 인건비(8,950만원) 기준(2025년)

7)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건비(1,143백만원) 대비 관리비, 공공요금(355.4백만원) 비중

[표 6] 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 인건비 및 기본경비등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회 수(A)		17	17	17	17	17	—
단가 (B=a+b+c)	인건비(a)	358	372	386	401	416	1,933
	자산취득비(b)	28	—	—	—	—	28
	기본경비(c)	111	113	115	117	119	575
	소계(a+b+c)	497	485	501	518	535	2,536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A×B)		8,449	8,245	8,517	8,806	9,095	43,112

주: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예산 편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위원회 회의비) 제정안은 시·도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사례와 제정안의 규정을 참고하여 회의비 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 수는 13인으로 가정함
- 제정안은 5급 이상의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소 2인 이상의 공무원 위원이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위원수) 유사사례와 제정안의 규정을 고려하여 민간위원 수는 13인으로 가정함
 - (회의일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조정업무 의결 등을 위하여 매월 1회씩 연 1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단가) 민간위원 참석수당(안전검토비 등 포함)은 위원 1인당 30만원을 적용함⁸⁾

8)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함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표 7] 분쟁조정위원회 유사사례 구성현황

(단위: 명)

위원회명	위원합계	민간위원수	공무원위원수
공제분쟁조정위원회	15	14	1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15	14	1

자료: 국토교통부

- (회의비) 시·도 지역에 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운영 비용은 전체 위원회 수(17개 시도)에 위원회 회의비용 단가 등을 곱하여 추산함
 - 회의비 단가는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위원회 수(17개) × 민간위원수(13인) × 위원당 참석수당 단가(30만원) × 개최횟수(12회)를 곱하여 추산함

[표 8] 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회 수(a)	17	17	17	17	17	—
민간위원 수(b)	13	13	13	13	13	
위원당 참석수당 단가(c)	0.3	0.3	0.3	0.3	0.3	—
개최횟수(d)	12	12	12	12	12	
위원회 회의비(a×b×c×d)	796	796	796	796	796	3,980

- 제정안에 따라 17개 시·도에 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9] 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A)	8,449	8,245	8,517	8,806	9,095	43,112
위원회 회의비(B)	796	796	796	796	796	3,980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A+B)	9,245	9,041	9,313	9,602	9,891	47,092

라. 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사유지도로 관리기본계획 및 시·도 관리계획 수립, 사유지도로 실태조사, 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92억 6,500만원(연평균 118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 국 비: 향후 5년간 총 10억 1,300만원(연평균 2억 300만원)
- 지방비: 향후 5년간 총 582억 5,300만원(연평균 116억 5,100만원)

[표 10]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사유지도로 관리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안 제4조 및 제5조)		290	10,438	—	—	—	10,728	2,146
사유지도로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 (안 제6조 및 제11조)		1,445	—	—	—	—	1,445	289
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 (안 제10조)		9,245	9,041	9,313	9,602	9,891	47,092	9,418
합 계		10,980	19,479	9,313	9,602	9,891	59,265	11,853
	국비	1,013	—	—	—	—	1,013	203
	지방비	9,968	19,479	9,313	9,602	9,891	58,253	11,651

주: 1.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국토종합계획 부문별(도로) 계획 현황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계획명			수립주기	수립주체	법적근거	최신계획
국토 종합 계획			20년	국토교통부	「국토기본법 제9조 및 제 19조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년) 2019.12 수립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20년	국토교통부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4조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2021~2040) 2021.12 수립
			10년	국토교통부	도로법 제5조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년) 2021.9 수립
	지방자치단체 도로 건설·관리계획		5년	도로관리청 (지방자치 단체)	도로법 제6조	각 지방자치단체별 도로·건설관리계획 (2021~2025) ※ 2026~2030년 계획 수립 중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5년	도로관리청 (국토부)	도로법 제6조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2022.1 수립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5년	도로관리청 (국토부)	도로법 제6조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2021~2025) 2021.9 수립
		고속 및 일반국도 등 관리계획	5년	도로관리청 (국토부)	도로법 제6조	고속 및 일반국도 등 도로관리계획 (2011~2025)